

2025년 수출 사상 최대치 달성, 내년 전망은?

[이주의 초점]

관세로 시작해 관세로 끝난 2025년,
진짜 충격은 내년 (4p)

[위클리 뉴스]

“김치·라면 HS Code 신설 추진” 관세청 K-푸드
관세행정 지원대책
필리핀에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착공 “농기계 수출
다변화 기대” (8p)

[2026 관세정책]

2026년 관세행정 ‘수출사업 지원’,
‘사회안전 수호’ 투트랙 전략 (13p)

[판례 동향]

수입 전자담배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 관한 판례 (19p)

[품목분류 동향]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제8413호 분류체계 및
주요 쟁점 (35p)



발행인 이종우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5년 12월 15일(통권 제2159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관세로 시작해 관세로 끝난 2025년, 진짜 충격은 내년에 온다

08 Weekly News

관세행정실무해설

- 13** 신규관세정책
2026 관세행정, '수출산업 지원'과 '사회안전 수호'로 재편 ... 신통상질서 본격 대응
- 17** 질의응답사례
웨빙의 HS Code

판례동향

- 19** 관세판례해설
원고가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 관한 판례

품목분류동향

- 35** 품목분류해설
제8413호[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Pumps for liquids, whether or not fitted with a measuring device; liquid elevators)]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 53** 세번 바로잡기
향미용 조제품

최신개정법령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www.kctdi.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세로 시작해 관세로 끝난 2025년, 진짜 충격은 내년에 온다

2026년 수출 7,110억달러 전망, 반도체 등 IT 품목이 성장 주도 … 자동차·철강은 부진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 벽을 넘어설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간 지속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고금리, 지정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선박이 선전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새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수출은 1.0% 증가한 7,11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고관세 정책 파급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불확실성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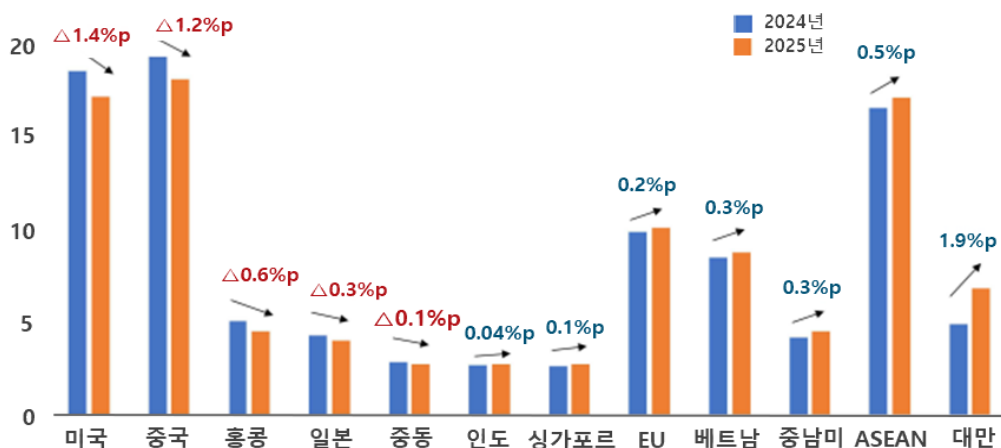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6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7,040억달러, 수입은 0.3% 감소한 6,300억달러, 무역수지는 740억달러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 “반도체·선박이 사상 최고치 견인”

2025년 수출 성장을 이끈 절대적 요인은 반도체와 선박이다. 반도체는 HBM(고대역폭메모리)을 비롯한 AI용 차세대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했고, 제한적인 글로벌 생산능력으로 인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며 올해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반도체시장이 본격 반등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HBM 공정을 선도한 것이 복합적인 호조 요인으로 작용했다.

선박도 마찬가지다. 2022~2023년 집중 수주한 고단가 LNG운반선 등이 인도되며 수출이 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부가 선박 중심의 수주 전략이 결실을 맺고 있는 셈이다.

●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 비중 변화 ●



2025년 1~10월(출처 : 한국무역협회)

반면 철강($\Delta 9.4\%$), 석유제품($\Delta 11.7\%$) 등은 고율 관세와 유가 하락의 이중고 속에서 연중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 2026년 글로벌 통상환경 “고관세 시대 본격 개막”

2026년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2.9~3.1% 수준으로 예상돼 2025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26년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돼 세계 상품교역 증가율은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우선통상정책(America First)이 본격 작동하면서 글로벌 무역 갈등이 재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관련 미 대법원 판결 등 법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등을 활용해 고관세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2025년 & 2026년 수출입 전망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e	2026년 ^p
수출(증가율)	6,322($\Delta 7.5$)	6,836(8.1)	7,040(3.0)	7,110(1.0)
수입(증가율)	6,426(12.1)	6,318($\Delta 1.7$)	6,300($\Delta 0.3$)	6,330(0.5)
수지	$\Delta 104$	518	740	780
무역규모	1조 2,748	1조 3,514	1조 3,340	1조 3,440

출처 : 한국무역협회

EU 역시 ▲철강 관세 상향(25→5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을 예고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인도 등도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는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된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관세·규제·공급망 리스크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 2026년 한국 수출입 전망 “AI·IT 상승세”

무역협회는 2026년 한국 수출이 7,110억달러(1.0%), 수입이 6,330억달러(0.5%), 무역수지는 7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반도체 중심의 IT 회복세가 전체 수출 흐름을 견인하는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6년 수출 회복세를 이끌 핵심 동력은 단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분야다. 무역협회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9% 증가한 1,8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공급 전환이 지연되면서

범용 제품 가격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무선통신기기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지속적인 확산과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완제품 단가 인상 등으로 수요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디스플레이 부문도 OLED 비중 확대와 IT기기 고부가 전략이 맞물리며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 2026년 품목별 전망(전년 대비) ●

수출 전망	5% 이상 증가	0% 이상~5% 미만 증가	0% 미만(감소)
품목명 (YoY%)	컴퓨터(7.8%) 반도체(5.9%) 무선통신기기(5.4%)	디스플레이(2.9%) 일반기계(2.8%) 섬유(2.0%) 가전(1.4%)	자동차부품(△0.5%) 자동차(△1.0%) 철강(△2.0%) 선박(△5.4%) 석유화학(△6.1%) 석유제품(△13.3%)

반면 비IT 품목은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자동차는 과거 3년간 이어진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와 미국 현지 생산 비중 확대 영향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전기차(EV) 인센티브가 축소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줄어든 만큼 감소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U 시장은 친환경차 인센티브 확대와 보급형 순수전기차(BEV) 모델 출시 증가가 맞물려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겠지만, 완성차의 현지화 전략 가속화는 여전히 수출 관점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남는다.

자동차부품 역시 완성차의 북미 현지조달 비중 증가와 내연기관차 비중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는 2026년 자동차 부문 수출을 전년 동기 대비 1.0% 하락한 712억달러로, 자동차부품은 0.5% 감소한 211억달러로 예상했다.

철강은 고율(50%)의 대미 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EU의 세이프가드·CBAM·TRQ(관세할당제) 등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수출 환경이 가장 어려워질 품목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물량 감소가 시작됐고, EU는 탄소 규제 강화에 따라 단가 경쟁력뿐 아니라 규제 대응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2026년에는 중국의 공급 조절 가능성과 일부 개발도상국의 수요 회복이 기대되면서 단가 상승이 일부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SEAN, 인도 등 신흥국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지만, 경쟁 심화와 무역구제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해 수출 전략을 정교히 세울 필요가 있다.

내년에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석유제품은 두 자릿수 감소가 예상되는 품목이다(△13.3%). 수출 물량 자체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요국 신·증설 영향이 겹치며 줄어들 전망이다. 단가 하락이 맞물리면서 전체 수출액 감소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역시 6%대 감소가 예상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대규모 신·증설이다. 이미 공급과잉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은 데다 저유가 환경이 유지되면 가격 경쟁력이 낮은 국내 제품은 가동률 조절 압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국내 신규 설비 일부가 2026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만, 글로벌 공급과잉이 워낙 심화된 상황에서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입 측면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줄어들겠지만, 반도체 생산 확대 과정에서 제조장비와 수입용 반도체 조달이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AI 수요 기반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IT제품이 수출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며, “한·미 협상을 계기로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됐지만, 내년 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0.5% 정도로 제한적이고, 미국의 중간선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개정 가능성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다”고 우려했다. 장 원장은 “중동, ASEAN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콘텐츠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성은 기자 |

● 품목별 수출 전망 정리 ●

(단위 : 억달러, %)

품목	2024년	2025년 ^a	2026년 ^b	2026년 전망
반도체	1,419 (43.9)	1,700 (19.8)	1,800 (5.9)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 및 HBM4 양산으로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출이 증가하고, 범용 메모리도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세 지속
자동차	708 (△0.1)	719 (1.6)	712 (△1.0)	역대 최고 수준 실적 지속에 따른 기저 부담 및 해외 생산 확대로 올해 대비 소폭 감소
일반기계	512 (△4.1)	468 (△8.6)	481 (2.8)	중동, ASEAN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원자재 가격·물류비 안정으로 소폭 반등
석유화학	480 (5.0)	426 (△11.3)	400 (△6.1)	중국 중심의 대규모 신증설 속에서 유가 하락 및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로 수출 지속 감소
석유제품	503 (△3.2)	444 (△11.7)	385 (△13.3)	국제유가 하락 속 주요 석유제품 수요 부진, 글로벌 경쟁 가속 등으로 수출 물량 감소
철강	333 (△5.4)	302 (△9.4)	296 (△2.0)	글로벌 수요 정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일본과 수출 경쟁 지속 등으로 감소
선박	256 (17.6)	313 (22.4)	296 (△5.4)	2025년 선박 수출 급증에 따른 높은 기저로 소폭 감소가 예상되나, 조선 업황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
자동차부품	225 (△1.8)	212 (△5.8)	211 (△0.5)	완성차의 미국 생산 확대, USMCA 개정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감소
무선통신기기	172 (11.1)	168 (△2.3)	177 (5.4)	폴더블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으로 스마트폰 완제품 가격 인상 본격화
디스플레이	187 (0.9)	172 (△8.0)	177 (2.9)	IT 제품의 OLED 적용 확대, 스마트폰의 고부가가치화 등 우호적인 수출 여건으로 소폭 증가
컴퓨터	132 (76.7)	127 (△3.8)	137 (7.8)	AI 인프라 확대, 스토리지 수요 증가, 대용량 SSD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기업용 SSD 중심 수출 증가
섬유	105 (△4.1)	98 (△6.7)	100 (2.0)	한한령 완화 기대, K-콘텐츠 파급력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 의류 중심 성장 예상
가전	8.0 (0.4)	72 (△10.0)	73 (1.4)	AI 가전 보급 확대로 소폭 증가하나,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성장 둔화가 하방 요인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치·라면 HS Code 신설”, K-푸드 관세행정 지원대책

K-푸드 주요 수출 품목인 김치와 라면의 국제품목코드(HS Code)가 신설되고, 품목분류 사전 심사 제도 활용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등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관세청이 12월 9일 발표한 'K-푸드 관세행정 지원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K-푸드 수출액은 2025년 11월까지 103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한 것으로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 품목별 수출 현황 ●

(단위 : 100만달러, %, 전년 동월 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1~11월		2025년 1~11월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K-푸드	9,919 (100.0)	4.9	9,966 (100.0)	0.5	10,663 (100.0)	7.0	9,698 (100.0)	6.5	10,375 (100.0)	7.0
가공식품	5,842 (58.9)	2.7	5,995 (60.2)	2.6	6,619 (62.1)	10.4	6,039 (62.3)	10.0	6,307 (60.8)	4.4
농산물	877 (8.8)	△7.8	895 (9.0)	2.0	905 (8.5)	1.1	790 (8.2)	△0.7	819 (7.9)	3.6
수산물	2,959 (29.8)	12.5	2,806 (28.2)	△5.2	2,855 (26.8)	1.7	2,613 (26.9)	1.7	2,852 (27.5)	9.1
임산물	27 (0.3)	△11.6	32 (0.3)	21.0	26 (0.2)	△20.6	25 (0.3)	△20.4	38 (0.4)	51.3
축산물	215 (2.2)	35.2	237 (2.4)	10.5	259 (2.4)	9.2	231 (2.4)	5.6	360 (3.5)	55.7

출처 : 관세청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관세청은 K-푸드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푸드의 국제 표준화, ▲수출입 리스크 해소, ▲K-푸드 브랜드 가치 보호, ▲해외 관세정책 선제적 대응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김치, 라면 등 주요 수출품목의 HS Code를 신설해 K-푸드를 국제 표준화한다.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간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고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HS Code 신설을 위한 교역량 파악과 식품산업 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김밥,

만두 등 수출 잠재력이 큰 품목을 발굴해 한국품목코드(HSK) 신설도 추진한다.

또 식품 원료의 경우 HS Code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 만큼,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시 가산세를 감면하고 신속심사(Fast Track) 적용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고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로 감면해주기 위한 「관세법」이 개정됐다.

K-푸드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은 강화되고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은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수출 산업협회와 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식품 산업 수출에 필요한 관세와 무역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특히 K-푸드 수출기업에 품목분류, 관세율, 원산지 판정 등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 제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하구현 기자 |

산업부, 모듈형 신통상협정 추진으로 미래 글로벌 통상질서 선도

산업부가 모듈형 신통상협정 신규 추진을 발표하고 미래 글로벌 통상질서 선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0일 모듈형 신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통상질서와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신통상협정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업계와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모듈형 방식의 신통상협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 광물, 그린경제, 디지털 등 4대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문안을 마련했다.

모듈형 통상협정은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만으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그린경제,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등 신통상 이슈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됐다. 자원과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시장개방에 민감한 신흥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여건과 협력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통상협력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더해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듈형 신통상협정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미래형 통상규범의 국제표준을 우리 주도로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며, “국가별 여건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유연하고 신속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모듈별 협력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올해 말까지 표준문안을 보완해 확정하기로 했다. 확정된 표준문안은 내년 초 싱가포르 및 ASEAN과의 FTA 개선협상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 하구현 기자 |

농진청, 선도유지(CA) 기술 적용 고구마 태국 첫 수출

일본산이 장악하고 있는 태국의 고구마 시장에 국산 고구마가 선박을 통해 처음 진출했다. 장거리 선박 운송 시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체농도조절 기술(CA, Controlled Atmosphere)을 활용한 결과다. 농촌진흥청은 11월 22일 부산에서 선적한 한국산 고구마 3톤이 12월 8일 태국 현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CA는 저장 농산물의 호흡률을 분석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저장·수출 기술이다. 그동안 고구마 수출은 신선도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항공 수출이 대부분이었으나, CA 기술을 적용한 컨테이너에 실어 선박으로 수출하면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수출 물량 또한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농진청은 이번 수출을 통해 수확 후 저장, 세척, 선별, CA 기술 적용 등 단계별 기술을 실제 수출 물량에 적용해 선박을 이용한 고구마 수출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현재 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체결로 기존 30%였던 고구마 관세가 0%로 철폐됐다. | 김성은 기자 |

필리핀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착공 … 농기계 수출 다변화 기대

필리핀에 한국농기계전용공단이 들어선다. 향후 동남아시아 농기계 수출거점 역할은 물론 북미에 편중된 농기계 수출 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0일 필리핀 카바나투안시에서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착공식을 개최하고 농기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조성 프로젝트는 농업 기계화를 원하는 필리핀정부와 동남아 지역 수출 확대를 원하는 국내 농기계 업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필리핀정부와 한국농기계조합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공단 조성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단계를 거쳐 필리핀 카바나투안시 내 6만평 부지에 제조공장이 설립되며, 필리핀정부는 토지 임대, 도로·전기·통신·용수 등 인프라, 관세·지방세 면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농기계 업계는 이번 프로젝트로 필리핀 공단을 수출거점 삼아 북미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2024년 농기계 수출은 북미 지역이 73%를 차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동남아 지역 농기계 수출은 전체의 4.3%로 비중은 낮으나 수출 규모가 2023년 3,700만달러에서 2024년 5,200만달러로 증가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특히 필리핀은 동남아 중 수출 비중이 전년도 기준 60%로 가장 높고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진출해 정착하기 유리한 국가로 평가된다.

한편 올해 농기계 수출은 미국 관세 부과와 물류비 상승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았는데도 10월까지 11억 1,7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다. | 하구현 기자 |

한국관세사회, “한·베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 이어갈 것”

한국관세사회가 베트남 봉사활동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민간 가교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다낭시 광푸구를 방문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복지시설 기자재를 전달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해외 경제 파트너 국가와의 상생에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겠다는 관세사회의 국제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무역국 중 하나로 한국 기업의 생산, 투자, 물류 활동이 집중된 핵심 경제파트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베트남 교역규모는 867억달러로 1위 중국(2,729억달러), 2위 미국(1,999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다.



11월 26일 광푸구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장학금 수여 행사에는 부이 응압 안 당서기장과 구청장 등 광푸구 주요 인사 10여 명과 학부모 약 200여 명을 비롯 지역 언론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는 한국의 무역과 관세를 책임지는 국가 전문가로서, 한국과 베트남의 깊은 경제적 연계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은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관세사회 국제봉사단은 광푸구 지역 복지타운(연꽃마을)을 찾아 생활·교육 기자재 전달식을 갖고, 시설 견학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달된 기자재는 취약계층 아동·노인·장애인 등 입소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 회장은 “관세사는 무역 현장에서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전문가이자 공공성을 가진 직역”이라며 “관세사회는 앞으로도 양국을 잇는 민간 교류의 다리로서, 전문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천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관세사회는 향후에도 베트남 다낭·광푸구 지역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장학금·복지 지원 사업을 매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품목분류·원산지 구분에 따라 관세 수입% 달라져 ... 수출기업 주 의 필요

미국 관세조치 확대로 규정 해석에 혼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실무 대응과 관세 절감 전략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2월 10일 ‘美 관세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미 수출 시 유의해야 할 원산지 및 이전가격 관리 방안과 합법적인 관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 사전심사(Advance Ruling) 및 최초 판매가격 기준(FSFE, First Sale For Export) 제도 등 총 네 가지 방안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관세 이슈로 인해 하나의 물품이 복수의 원산지를 갖는 ‘1물(物) 다(多) 원산지’가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같은 수출품일지라도 FTA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와 상호관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비특혜원산지의 결정기준이 달라, 한 제품의 원산지가 단일 국가로 고정되지 않고 여러 원산지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는 한·미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다. 게다가 동일 물품에 두 가지 이상의 비특혜원산지가 결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가령 원재료 a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b, c, d는 국내 조달로 생산한 완제품 E를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완제품 E의 원산지를 중국산(원재료 a)과 한국산(b, c, d로 제조된 반제품 f)으로 분리해 판정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CBP의 판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사전심사 제도를 제시했다. 사전심사는 미국으로 상품 수출 시 ▲원산지,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에 대해 CBP에 구속력 있는 사전 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통관 과정에서의 세액추징 위험을 줄이고 관세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보고서는 사전심사 결과로 발급되는 CBP 서면답변은 미국 내 모든 세관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이므로, 신청에 앞서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간 거래가격(이전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전가격은 적법한 기준에 따라 법인세와 관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하구현 기자 |

2026 관세 정책

글로벌 통상질서가 한·미 관세협상을 기점으로 급변하고, 우회덤핑·전략물자 불법 반출 등 무역안보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국가안보 리스크를 선제 차단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본지는 12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도 추진과제를 정리했다. (인포그래픽 : 관세청)

2026 관세행정, '수출산업 지원'과 '사회안전 수호'로 재편 ...

신통상질서 본격 대응

1. 신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 ...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본격화

자체 추진

수출기업의 新통상질서 대응 지원

▶ 美 관세협상 이행과 주요 산업 수출성장 지원

- 한-미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 구성
- 美 원산지 판정·관세율 품목번호 정보 제공
- 반도체, 조선업 등 산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물류제도 혁신

▶ EU CBAM 대비 탄소배출 관리 프레임워크 협의 추진

- EU 관계당국, 국내 관계부처 협업 강화
- CBAM 전담 통관애로 해소팀 운영
- 탄소배출 관리 프로그램(CBAM-PASS) 개발·무료보급

관세청의 2026년 정책 첫 번째 축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지원 체계 고도화다. 특히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체계는 한국 수출기업의 원가·공급망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관세청은 이를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국 시장에서 기업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 원산지 관리, 품목번호 정확성 제고, 사후검증 대응능력 확보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후속조치가 추진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개최될 ‘한·미 관세청장 회의’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가 출범한다. 이 협의체는 미국 측 원산지 판정사례 공유, 분쟁 가능성 높은 품목 파악, 국내 기업 맞춤형 해설자료 제공 등 실무 협력을 전담하게 된다. 산업통상부 등 사후 원산지검증 대비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ASEAN·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FTA 협의체 설치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그동안 일부 국가에서 특혜 원산지 기준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나 FTA 특혜 적용에 필요한 처리 지연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 애로가 반복돼 왔는데, 이를 양자·다자 협력 구조로 전환해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는 물론,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정식 시행은 국내 수출기업의 필수 대응 과제로 떠올랐다. 관세청은 단순 통관 검증을 넘어, 탄소배출량 관리 능력을 기업 경쟁력의 일부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우선 관세청은 원산지 정보와 탄소배출량을 FTA-PASS 안에서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기업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고도 EU 규제 대응과 FTA 특혜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향후에는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 사업과 연계해 ‘한국형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37,24

AI 등 환경변화에 최적화된 업무체계 구축

▶ 역직구 수출 활성화, 직구 안전성·편리성 향상

- ‘對일본 간이통관 제도’ 등 역직구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시행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개통
- 해외직구 반품·환급절차 간소화

▶ 관세행정 AI 대전환 본격 추진

- 수출입 안전관리 업무 우선으로 관세행정 AI 모델 단계적 개발
- 수출입데이터 AI 리더블 형태 전환
- 민간 활용도 높은 데이터의 전향적 개방

해외 직구·역직구가 일상화된 가운데,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직구 물품의 통관·반품 편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을 구축·개통

(2026.10.)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직구한 물품을 반품 시 구매자가 플랫폼에서 관세 환급을 먼저 지급받고, 플랫폼이 관세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전자적 환급양도제도가 도입된다.

일본 역직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신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종합대책, 미국 소액면세 폐지 이후 떠오른 폴필먼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확정가격 신고기한 연장(60→90일) 등도 추진한다.

그밖에 관세행정의 AI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수출입 안전 업무를 우선으로 AI 모델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정보전략계획(ISP)을 착수해 5월까지 AI 핵심 과제를 도출한다. 2027년에는 본사업을 시작해 여행자·특송화물에 대한 수출입신고서 심사, 우범화물 선별, X-Ray 판독을 지원해주는 ‘AI 융합 통관 영상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2. ‘사회안전 수호’ 무역안보 침해범죄 급증 … “전담조직 신설로 상시 대응”

국정과제 37

무역안보 침해 · 초국가범죄 엄정대응

▶ 무역안보 침해행위 대응기반 마련

- 무역안보 침해* 대응 전담 수사체계 구축
* 국산둔갑 우회수출, 우회덤핑, 전략물자 반출 등
-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 초국가범죄에 사용되는 자금고리 원천 봉쇄

- EU 관계당국, 국내 관계부처 협업 강화

▶ 무역범죄 수사를 위한 전문성 · 책임성 강화

관세청이 2026년 두 번째 중점 과제로 내세운 것은 ‘사회안전 수호’다. 최근 3년간 우회수출, 전략물자 반출, 무역빙자 금융범죄 등 무역안보 침해 및 범죄 규모가 폭증하면서, 국경단계 단속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무역안보범죄’라는 범주를 공식화하고,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해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국산 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은 국제 제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신뢰도 차원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전담 수사조직은 공급망 불안 조기 탐지를 위해 수입량·보세창고 재고·수출량을 통합 분석하는 조기경보 모델을 활용해, 위험 신호 발생 시

즉각 수사·단속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된다.

덤핑방지관세 조치 확대와 우회덤핑 증가 추세에 따라, 관세청은 보세구역 관리권한과 물품검사 전문성을 활용한 우회덤핑 조사를 추진한다. 원재료 수급불안정 등 위기 조기탐지를 위해 수입량과 함께 보세창고 비축량·수출량까지도 포괄 분석하도록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2026년부터 불법 외환거래 수사 범위를 도박·보이스피싱 등 전 초국가범죄 영역으로 확대한다. 해외 ATM 인출내역, 고위험 여행자 패턴 분석, 위조지폐 탐지 등 범죄자금 흐름 분석을 정교화해, 국내외 범죄조직의 자금 회전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역거래와 연계된 보조금 부정수급, 해외재산 은닉, 기업가치 왜곡 등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무역범죄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국정과제 37

마약, 총기류의 국내반입 원천차단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새로운 단속체계 구축

- 마약 전과자·투약자 정보를 활용한 정보분석 고도화
- 국제공조로 마약차단막을 해외까지 확대
- 국경단계 통관검사 + 마약수사 일체화

▶ 국경단계에서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협요소 차단

- 관계기관 간 총기·탄환류, 사제총기 부품 등 테러물품 차단 공조
- 데이터 기반 통합국경관리를 위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체계’ 설계

국경 단계 마약류 밀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 전과자·투약자 정보를 이용해 위험도를 자동 계산하는 AI 기반 모델을 고도화하고, 우범국 화물 X-ray 판독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품목 중심의 ‘통관단계 세관장 점검품목’ 재정비, 미인증 의료용품·산업안전 위해물품 수입요건 회피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최후방 수비수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AI 혁신으로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관세청의 2026년 중점 추진과제가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제 안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기대를 모은다. | 김성은 기자 |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웨빙의 HS Code

텐트 부자재로 쓰이는 나일론 웨빙과 PP(폴리프로필렌) 웨빙의 HS code를 알려주세요.

제5806호 HS 해설서에서 “(A) 세폭(細幅 : narrow)직물 : 이 류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류에는 다음과 같은 세폭(細幅 : narrow) 직물을 포함한다. (1)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서 제직된 폭이 30cm 이하인 스트립 모양의 직물로서 양 가장자리에 단(selvedge)(평판상이나 관상)이 있는 것. 이 물품은 특수한 리본 직기에서 제직되며 여러 개를 동시에 제직하기도 하며 ; 어떤 경우의 리본은 한쪽이나 양쪽의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 <중략> ... 위의 물품에는 직조된 리본의 특성을 가진 걸룬(galloon)뿐만 아니라 리본(ribbon)과 웨빙(webbing)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서 “제5806호에서 ‘세폭직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폴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물품 모두 위 규정에 부합하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의 ‘그 밖의 직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것’에 해당된다면 제5806.32-0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세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대신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해 첨부해야 합니다. 미제출 사유서도 과세자료와 마찬가지로 ‘동일판매자, 동일조

건'의 경우 한번만 제출하고, 추가로 수입하는 경우 미제출 사유서가 제출된 신고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환급 / 이중납부 환급절차

동일한 고지서의 관세를 2회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중납부의 경우 환급신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기조(환급요건) 및 제 73조(환급신청서류)에 의해 세 가지 서류(① 과오납환급 신청서, ②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납부영수증 등 납부 증빙자료, ③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를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유니패스에서 신고시 궁금한 사항(입력방법, 오류 해결 등)은 소관부서인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법령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기조(환급요건), 제72조(환급신청기한), 제73조(환급신청서류)

FTA / 한·ASEAN FTA 누적기준

누적기준 충족 증빙서류로 ASEAN 회원국 관세당국 등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한·ASEAN FTA의 누적기준 적용을 위해 다른 협정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재료)의 원산지증빙서류에 '한·ASEAN FTA상의 원산지증명서(Form AK) 외에 해당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한·ASEAN FTA 협정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고 한·ASEAN FTA 적용 대상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ASEAN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Form D), WTO 협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Form A), 비특혜원산지증명서(Form B)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원고가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봐 개별 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 관한 판례

이 하 철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1. 들어가며

「담배사업법」¹⁾ 제2조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현행 「개별소비세법」²⁾ 제1조 제2항에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으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구 「개별소비세법」(2020.12.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해, (연초의 잎이 원료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연초의 대줄기 등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해 제조한 것은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해당하지 않았다.

살펴볼 판례³⁾는 위의 구 「개별소비세법」 적용 기간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에 대해, 원고가 ① 해당 전자담배용액에 함유된 니코틴은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하지 않고, ② 담배부산물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피고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고, ④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각 경정한 피고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 관한 판례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11.5.부터 2020.7.1.까지 국외 기업인 B(이하 ‘쟁점 거래처’라 한다)가 중국 소재 C유한공사(이하 ‘C’라 한다) 생산의 액상 니코틴 원액(이하 ‘쟁점 니코틴’이라 한다)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1) 2014.1.21. 개정 이후, 현행 법률(2025.10.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2조 제1호 ‘담배’의 정의 부분 동일

2) 2024.12.31. 법률 제20606호로 개정된 것

3) 대법원 2025.10.15. 선고 2025두34146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및 서울고등법원 2025.5.30. 선고 2024누38980 판결

이 사건 물품에 사용된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담뱃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담배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봐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했다.

나. 피고는 2020.8.10.부터 2020.12.16.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물품에는 ‘담뱃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으므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한다고 봐, 2021.11.25.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각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해 원고가 2022.2.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12.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쟁점 니코틴은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됐고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해 생산된 이 사건 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 니코틴은 연초의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이용해 생산됐다.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과거 「담배전매법」이 ‘담배부산물’과 ‘연초의 잎’을 엄격히 구분해 규율하다가 「담배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담배부산물’이 「담배사업법」의 규율 대상에서 삭제된 연혁 등에 비춰 보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연초의 잎’에는 ‘담배부산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담배부산물에서 추출된 쟁점 니코틴을 이용해 생산됐을 뿐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이 아니므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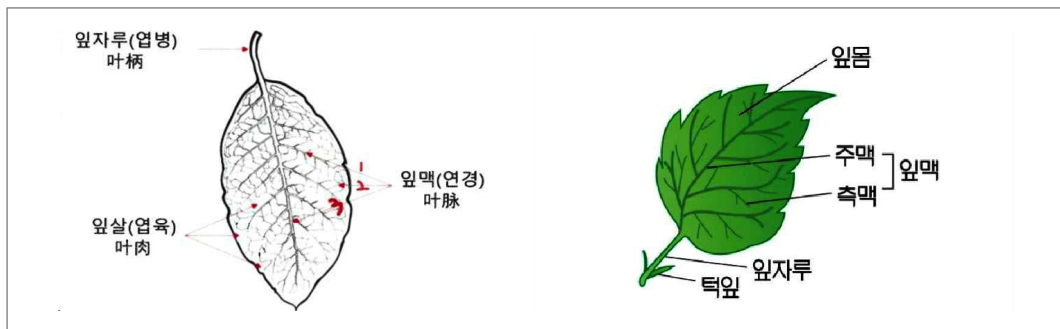
3) 기획재정부가 2016.9.29.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민원 회신을 했고, 위 회신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서 “통상적으로 담배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잎몸 이외의 잎맥이나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신뢰를 형성했으며, 원고는 이를 신뢰해 국외에서 줄기 니코틴을 수입했다. 또한 관세청은 2019.11.4.경 줄기 니코틴의 경우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별 제조사실 증빙자료, 제조자 허가증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자료가 구비되면 수입된 니코틴을 줄기 니코틴으로 인정하고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와 같은 행정관행이 형성됐다. 원고는 이처럼

수입통관 방침이 강화되기 전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했고, 그에 관해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해 위법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했고, 원고로서는 쟁점 거래처가 제공하는 무역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 부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연초 잎의 모양 및 명칭은 다음 그림과 같다.



2) 기획재정부는 2016.9.29. 「담배사업법」 제2조를 근거로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민원 회신을 했다.

3) 중국의 담배사업 체계 및 규제

가)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연초전매법(이하 ‘연초전매법’이라 한다)을 제정해 담배사업에 대한 국가 전매전영제도(專賣專營制度)를 전면 확립했다.

나) 연초전매는 국가가 연초전매품의 생산, 판매와 수입·수출 업무에 대해 독점적 경영, 획일적 관리를 실행하는 제도로써, 국가가 연초전매품의 생산, 판매, 수출입에 대해 법에 따라 전매관리 및 연초전매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

다) 연초전매법 제2조는 “연초전매품이라 함은 껀련, 시가, 각연초, 재열건조 담뱃잎, 담뱃잎, 껀련지, 필터봉, 담배용 각연초, 담배전용기계를 말한다. 껀련, 엽껀련, 각연초, 열건조담뱃잎을

통칭해서 담배 제품이라 한다”는 취지로, 같은 법 제7조는 “담뱃잎은 담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열건조 담뱃잎과 자연건조 담뱃잎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다.

라) 중국담뱃잎세잠정조례는 연초 잎을 수매한 금액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2006.4.28.부터 시행됐는데, 연초 잎을 수매하는 회사가 담뱃잎세의 납세자가 된다. 이 조례에서 담뱃잎이란 자연건조 담뱃잎과 열건조 담뱃잎을 말한다. 담뱃잎세의 납부세액은 납세자가 수매한 연초 잎의 수매금액에 20%의 세율로 산정된다.

4) C의 사업내용

가) C는 2011.10.18.경 설립돼 2012.10.경 중국 연초전매국으로부터 연초폐기물 처리업체로 승인받았다.

나) C의 회사 소개자료는 도표로 “연초 폐기물(Tobacco waste)은 연초 폐기물 센터(Waste disposal center)에서 재활용돼 니코틴(Nicotine), 바이오 유기 비료(Bio-organic fertilizer), 담배 추출물(Tobacco extract)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연초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여러 방안을 설명한 후, “담배 주맥(stems)과 폐기물(waste materials)은 재활용될 수 있고, 광범위한 시장발전전망이 있다”는 기재 아래, 담뱃잎의 잎몸 부분을 ‘mesophyll’로 표시하면서 담배를 만드는 주된 물질로, 잎맥 중 주맥 부분을 ‘Stem’으로 표시하면서 연초 제조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부분으로, 담뱃잎 하단 줄기 부분을 ‘기타(others)’로 표시하면서 유기농 비료(organic fertilizers)의 원료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 C의 홈페이지에는 “니코틴 추출 폐기물(extracted waste)과 폐기갈간(廢棄秸秆, crop straw waste)을 사용해 농자재 제품을 만든다”고 기재돼 있고, 위 회사가 생산하는 니코틴 제품(L-Nicotine) 원액은 ‘니코틴 담뱃잎 추출물(Nicotine tobacco leaf extract)’이라고 설명하면서 연초 잎의 잎맥 사진을 게재했다. C는 위 홈페이지에서 니코틴(L-Nicotine)의 용도를 식물성 살충제의 하나로 설명하는 한편, 니코틴 상품판매 화면에서는 니코틴을 살충제, 의약품, 담배대용품(nicotine patch, cigarette substitute) 내지 전자담배 용액(e-juice)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 C의 2016년 공개전양설명서(우리나라의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서류다)에서는 C의 주요 사업으로 “회사는 주로 담뱃잎(烟叶, 연엽), 연경(烟梗) 등 담배폐기물을 이용해 니코틴을 추출하며, 주요 영업업무는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다”, “회사의 주요 제품인 니코틴의 응용분야는 전자담배, 살충제, 의약제조 등 세 가지 분야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이 설명서의 C의 영업수익 현황을 보면 2014년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주요 영업업무 수익이 회사 수익의 87.83%에서 95.87%를 차지하고, 니코틴이 이 주요 영업업무 수익의 100%를 차지한다.

마) C의 2016년 공개전양설명서의 ‘주요구매계약사항’에 따르면, C는 2014.3.부터 2016.7.까지 용제유(溶劑油), 생물 곡식 과립(生物質顆粒燃料), 폐기연경(廢棄煙梗), 탄산소다(片碱) 등을 구매했을 뿐이고, 연초 대줄기를 별도로 구매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C는 이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용제유(溶劑油)를 2,421,271위안에 구매하고, 1차례(2014.4.6.) 담뱃잎 재건조 가공회사인 호북연초금엽복고유한책임공사(이하 ‘호북공사’라 한다)로부터 폐기연경(廢棄煙梗)을 255,270위안에 구매했다.

바) C는 2015.9.경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최종 거절됐고, 연초 폐기물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해서만 특허출원이 이뤄졌다.

5) 피고의 관세조사 경위

가)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 구매계약서인 C와 호북공사 사이에 체결된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약’은 호북공사가 C에게 폐기연초분말계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이 서류에는 “폐기연초분말계는 언스 재건조 공장의 생산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연경(廢棄煙梗), 제진 담뱃재 등 담배폐기물을 설비를 통해 40mesh 이하로 분쇄한 후, 회수해 이용할 수 없는 담배 폐기 분말을 말한다”고 기재돼 있다.

나) 한편 C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호북공사와 ‘폐기연경처리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중국 언스시(恩施市) 연초전매국의 확인·서명을 받아 폐기연경(廢棄煙梗)을 공급받아 왔다. C와 호북공사가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약’에는 ‘연초 대줄기’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다.

6) ‘연경(煙梗)’의 의미에 관한 중국 내 기관 등의 회신

가) 중국의 백과사전(중국 바이두 백과사전 및 MBA 백과사전)에는 연경(煙梗)을 “담뱃잎의 두껍고 단단한 엽맥으로 잎 무게의 약 25~30%(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MBA 백과사전은 연경을 영문으로 ‘Tobacco Stem’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나) 중국의 최대 담배 생산지역인 운남성의 인민정부외사판공실은 주청두한국총영사관의 ‘연경(煙梗)’의 의미에 관한 질의에 2019.11.28. “연경은 구체적으로 초벌 건조한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이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다) 중국 국세청은 2020.4.28. 한국 국세청의 C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

요청정보 I. 중국 내 회사가 니코틴 또는 담배를 제조,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License) 취득해야 하며 니코틴 생산은 국가 판매 독점국(State Tobacco Monopoly Bureau)의 감독을 받아야 함. 우리 조사에 따르면 C는 니코틴이나 담배를 제조, 배급, 국외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

요청정보 II. C는 담배 줄기를 수집하고 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도록 허가 받았음. C에 따르면, 생산하는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로부터 생산된 것임.

라) 호북공사는 2020.9.23. 중국 해관총서(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및 인터폴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저희 회사는 담뱃잎 탈엽 재건조 가공회사로 언스, 상양 두 개의 재건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경영범위는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주로 담뱃잎을 탈엽기를 이용해 물리적인 방식으로 잎담배와 담배잎맥으로 분리해, 잎담배와 길이가 다른 길고 짧은 담배잎맥, 담뱃잎 조각, 폐기담배잎맥 등 네 가지 형태의 제품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 중 잎담배와 길이가 다른 길고 짧은 잎맥, 담뱃잎 조각은 위탁가공하는 궐련기업이 회수하며, 폐기담배 잎맥은 담배로서의 가치가 없어 중국 연초정책 규정에 따라 분쇄 파기한 후(분쇄 후의 과립은 40목 이하여야 함) 출하구역으로 보내 처리합니다.

저희 회사의 생산가공과정은 중국 국가 법률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C가 체결한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약(번역문에는 '2018 건조기 폐기연초분말 판매협약'라고 기재돼 있다)>에는 언스 재건조공장이 C에 제공하는 폐기연초분말은 생산과정 중 발생한 폐기 담배 잎맥, 제진 담뱃재 등 연초폐기물로, 설비를 이용해 40목까지 파기한 회수 불가능한 폐기물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스 재건조공장은 2018년 건조기 담배 잎맥, 제진 담뱃재 등 연초폐기물 전부를 파기설비를 이용해 40목 수준까지 분쇄 파기처리했으며, 그 중 C에 3130.493톤을 제공했으며, 그 외 후베이성 내 기타 비료생산 경영허가증을 가진 기업에 2208.568톤을 제공했습니다.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2019.8.30.부터 현재까지, 우리 언스 재건조공장은 C에 분쇄 파기 후의 폐기연초분말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피고는 중국 해관총서에 C와 호북공사 사이에 2017년경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약' 계약, 연초의 잎맥과 연초의 줄기(21p 이미지)를 사진으로 제시하며 폐기연경 및 연경에 관해 질의했고, 중국 해관총서는 2021.2.26. 위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1. 2011년 10월에 설립된 C는 주로 식물 중간재를 추출·판매(미생물 폐기물, 미생물 접종원, 유기비료, 셀레니움비료, 미량원소, 수용성 비료)하고 담배향(맛) 연구·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 <중략> ...

2. 2014.4. 후베이연초전매국(Hubei Tobacco Monopoly Bureau)은 생물 살충제와 생물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되도록 C의 폐기연경(waste tobacco stems)(압착 후 형태 파기) 처리를 승인해줬습니다. 연간 총량은 6,500톤 미만이어야 합니다(단계별 이행). 또한 C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연초전매법 및 업계관리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하며 연초전매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3. 2012.1.부터 2019.8.까지, 호북공사는 폐기연경(waste tobacco stems) 33140.46톤을 C에 공급했고 2019.9.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7) C의 입장

가) C는 쟁점 니코틴이 문제되자 2019.7.20.경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경(연초 대줄기)이고, 한국시장에 공급하는 니코틴에는 주맥과 지맥이 있지 않다. 대줄기를 번역할 어휘가 없어서 ‘연경(STE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 C는 원고 외 다른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에서 피고에게 “니코틴 생산 원재료로 사용하는 ‘연경(갈경)’은 ‘연경(stem)’과 동일한 것이고, 위 연경은 호북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다른 원재료는 없다. 니코틴의 원재료는 갈경이고, 연초의 가장 굵은 줄기다.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상세하게 공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8) 중국 내 담배 관련 현황

가) 윈난성 연초연엽공사는 2019년경 주청두한국총영사관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1. 윈난성 연초연엽공사는 담배를 생산하지 않고, 담뱃잎 이외의 부분은 구매하지 않으며, 담뱃잎 이외 줄기 부분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 윈난성 연초연엽공사는 농가로부터 담뱃잎을 구매해 담배 제조상(중국에서는 담배 제조상 역시 국영기업에 속하며 관리가 엄격함)에 제공하고 있음.
2. 윈난성 연초연엽공사는 담뱃잎 관련 폐기물을 중국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중국연초총공사는 연초 잎을 기준 중량(50kg)에 따라 등급별로 가격을 정해 수매하고 있다.

9) 연초 대줄기로부터 니코틴 추출 가능성 및 효율성

국내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D는 피고의 요청으로 연초 잎맥과 대줄기의 각 니코틴 수율(收率, 원자재에 어떤 화학적 과정을 가해 원하는 물질을 얻을 때, 실제로 얻어진 분량과 이론상으로 기대했던 분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을 말한다)을 측정했다. 그 결과 니코틴을 연초 대줄기로부터 추출하는 경우 0.03%, 연초 잎맥에서 추출하는 경우 0.39%로 나타났다.

라. 이 사건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개별소비세법」(2020.12.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6호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담배에 해당하는지를 그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었는지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장치를 이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그 원료로 하는 한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9.28. 선고 2018도9828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해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담뱃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 니코틴을 사용한 이 사건 물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C는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를 주요 영업업무로 하고, 니코틴이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C가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니코틴을 추출했다면 C에게는 원재료인 연초의 대줄기 매입이 매우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C에 대한 공개전양설명서, C와 호북공사 사이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약’, 호북공사의 2020.9.23.자 답변에는 C가 호북공사로부터 폐기연경을 매입한다는 내용만 나타나 있을 뿐, 별도로 연초 대줄기를 매입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C가 농가에서 직접 연초 대줄기를 구매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가구매 영수증, C가 중국 과세기관에 제출한 자료, 농민진술

서, 농민 성명서, 대줄기 영수증, D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①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재료 구매계약 증빙으로 C와 호북공사 사이에 체결된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약’을 제출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C 생산공정도에 따르면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경(烟梗)’이라고 표기하고 있음에 반해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추가로 제출한 위 자료들에는 이와 달리 ‘연경(烟莖)’, ‘갈간(秸秆)’, ‘연갈간(烟秸秆)’으로 기재돼 있는바, C는 홈페이지를 통해 “니코틴 추출 폐기물(extracted waste)과 폐기 갈간(廢棄秸秆, crop straw waste)을 사용해 농자재 제품을 만든다”고 소개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춰 보면,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이 니코틴 추출을 위한 원재료 구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자재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 ③ 원고 제출 영수증 중 일부는 2020.11.17.에 작성된 것이어서 쟁점 니코틴과 관련이 없는 점, ④ D 사실확인서에는 “2023.7.경까지 C의 F지사 총경리로 근무했다는 D가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액상 니코틴은 담배 경작농으로부터 구매해 가공, 생산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기재 내용은 C 홈페이지 안내문 등 다른 증거들과 배치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이 근무하고 있지 않던 기간인 2024.1.9.자 중국 사법부의 참관조사를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기재하고 있기도 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위 주장 및 증거는 쉽게 믿기 어렵다.

나) 연경(烟梗)의 의미와 관련해, ① 호북공사는 “C에 제공하는 폐기연초분말은 폐기 담배 잎맥, 제진 담뱃재 등 연초 폐기물이다”라고 답변한 점, ② 중국 해관총서는 2021.2.26. 연초의 잎맥 부분을 가리키며 폐기연경이라고 답변한 점, ③ 중국의 백과사전에서 “연초 잎의 두껍고 단단한 엽맥으로 잎 무게의 약 25~30%를 차지”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④ 중국 운남성의 인민정부외사관공실은 “연초 잎의 주맥과 지맥이다”라고 답변한 점에다가 중국은 전국 담배 사업의 인원, 재정, 물자, 생산, 공급, 판매 등을 집중적·획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품 생산 공정 및 사용되는 용어도 통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해 보면, 호북공사와 C 사이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약’ 및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약’에 기재된 폐기연경은 연초의 잎맥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담배제조회사인 E가 한국과 중국에서 각 출원한 담배줄기처리방법 특허에서도 중국어로 ‘烟草莖(烟梗)[연초경(연경)]’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연경(烟梗)은 연초의 대줄기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가 ‘담배줄기 처리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0009 문단에서 ‘莖’의 의미는 연초 대줄기(Stalk)라는 취지로, 0010 문단에서 ‘梗’의 의미를 주맥과 측맥인 잎맥(Stem)이라는 취지로 별도로 설명하고 있는바, 위 烟草莖(烟梗)[연초경(연경)] 기재만으로 중국에서 연경(烟梗)이 연초 대줄기를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중국 언론은 연초 잎 수확 후 남은 연초 대줄기를 ‘연초갈간(烟草秸秆)’으

로 기하고 있기도 한 점까지 더해 보면, 연경은 연초의 잎맥을 지칭한다고 보일 따름이고, 달리 연초의 대줄기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우리나라에서 C가 생산한 니코틴의 원재료가 문제되기 이전까지 C가 스스로 작성한 홈페이지, 회사소개자료, 공개전양설명서에서는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었고, 오히려 연초의 잎맥 사진을 제시하는 등으로 연초의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C가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경(연초 대줄기)이고, 대줄기를 번역할 어휘가 없어서 ‘연경(STE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연초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이 성명서는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가 문제된 이후에야 나온 것이고, 기존에 스스로 밝힌 사업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

라) 중국연초총공사는 연초 잎을 기준 중량(50kg)에 따라 등급별로 가격을 정해 수매하고 있고, 중국담뱃잎세잠정조례에 따라 이와 같이 수매한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중국연초총공사로서는 수매 가격 및 조세의 증가라는 이중 부담으로 인해 대줄기를 포함한 중량을 기준으로 수매금액을 산정할 이유가 없고, 연초 잎의 중량만을 기준으로 수매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원난성 연초연엽공사도 주청두한국총영사관의 질의에 대해 연초 잎 이외 부분은 구매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가에서 줄기절단법에 따라 연초 잎과 대줄기를 함께 수확한다고 하더라도, 연초점에서 수매하는 단계 이전에 연초 잎과 대줄기를 분리하는 작업이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연초점에서 수매한 연초 잎을 가공, 재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호북공사가 “연초 잎과 대줄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 뒤 남은 대줄기를 C에게 납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다. 그리고 C는 홈페이지를 통해 “니코틴 추출 폐기물(extracted waste)과 폐기갈간(廢棄秸秆, crop straw waste)을 사용해 농자재 제품을 만든다”고 소개한 사실이 있고 폐기갈간은 식물의 대줄기를 의미하며 호북공사는 C에 폐기연경만을 공급했던 점에 비춰 보면, C는 폐기연경에서 니코틴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와 농가 등을 통해 공급받은 식물의 대줄기를 이용해 비료 등을 생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 제출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C가 그러한 기술을 갖고서 실제로 상업적인 생산에 적용해 쟁점 니코틴을 생산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① C는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 관련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우리나라에서 C가 생산한 니코틴의 원료가 문제되기 이전까지 C가 스스로 작성한 홈페이지, 회사소개자료, 공개전양설명서에서는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③ C가 연초 대줄기를 매입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율이 현저히 낮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의 측정 결과상 연초 잎맥이 연초 대줄기보다 니코틴 추출률이 13배 높다), C가 호북공사로부터 공급받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니코틴 추출률이 높은 폐기연초분말(연초 잎맥 폐기물로 만들어진 것이다)을 두고 그것이 아닌 니코틴 추출률이 현저히 낮은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취할 태도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쟁점 니코틴을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추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중국은 연초전매법을 제정해 연초 재배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적극 개입·통제하고 있으므로 C가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중국 국세청은 2020.4.28. 우리나라 국세청에 “C는 니코틴이나 담배를 제조, 배급, 국외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회신한 점, ② 중국 해관총서는 2021.2.26. 피고에게 “후베이연초전매국이 생물 살충제와 생물 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되도록 C의 폐기연경(waste tobacco stems)(압착 후 형태 파기) 처리를 승인해줬다”고 회신했는데, C는 홈페이지에서 C가 생산한 니코틴(L-Nicotine)의 용도로 식물 살충제를 제시했던 점, ③ 중국의 연초전매법은 자연건조 담뱃잎과 열건조 담뱃잎만을 규율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의 “중국 연초전매국이 2020년경 발표한 ‘담배전매제품 폐기 관련 통지’와 같은 중국 당국의 정책적 통제로 인해 원고로서는 연초 대줄기를 포함한 폐기 연경 또는 연초 폐기물에서 니코틴을 추출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연초 부산물이나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해왔다는 원고의 기존 주장은 물론 원고가 당국으로부터 받은 허가 내용, 원고가 소개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내용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가 폐기연경에서 쟁점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중국의 기존 담배 규제 체계 하에서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사) 원고는, “C가 연초 갈간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국제시장에서 선호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언스시의 관련 자료, 토양 보육 복원 및 농경지 오염문제 해결 제안에 대한 답변에 의하더라도 C의 니코틴 추출 재료는 연초 대줄기를 의미하는 갈간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자료는 언스시 농업국의 2018년 갈간 종합 이용과 관련된 자료로서 갈간을 이용한 유기비료사업 및 연료사업 등의 현황과 개선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C로부터 수입한 니코틴의 생산 재료가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닌 점, C는 갈간(秸秆)을 비료화하는 업체로 선정된 회사로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갈간(秸秆)을 이용해 유기비료를 생산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는 점, 중국 백과사전에 의하면 ‘갈간(秸秆)’은 ‘성숙한 농작물의 경(茎·줄기)·잎(叶·잎) 부분의 총칭, 통상 밀, 벼, 옥수수, 감자류, 유채, 목화, 사탕수수, 기타 농작물의 씨를 수확하고 남는 부분’이라는 것이므로, ‘갈간(秸秆)’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내용이 연초 잎이나 연초 잎맥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만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 자료가 C의 연초 잎맥을 이용한

니코틴 생산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아) 원고는 니코틴 생산에 연초 대줄기만을 이용했다는 근거로 사진 또는 영상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나, 이 자료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물품을 제조할 당시의 영상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물품의 재료가 연초 대줄기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자) 원고는 우리나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중국 사법부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후 송부해준 ‘국외 한중조약 증거 회신서’와 그 조사를 위한 ‘조사범위 사전 고지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의 원료가 연초의 대줄기라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 서류에 중국 사법부가 이 사건 물품의 원료는 연초의 대줄기라고 확인해주는 내용의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위 각 서류 중 ‘국외 한중조약 증거 회신서’에는 이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C의 설명문, C의 연초전매생산기업 허가증, 원재료 공급과 관련된 계약서 등의 서류가 첨부돼 있을 뿐이고, ‘조사범위 사전 고지서’에는 중국 사법부가 조사할 범위에 대해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정도에 불과해, 이 사건 물품의 원료가 연초의 대줄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담배부산물인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담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담배부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물품의 수입 당시에 시행되던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2) 구 「담배전매법」(1972.12.30. 법률 제2405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담배’를 ‘연초, 잎담배, 제조담배, 담배유사품 및 담배부산물’로, ‘제조담배’를 ‘잎담배를 주 원료로 하여 깃연용·요용 또는 후용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담배부산물’을 ‘담배의 경작, 조리, 제조과정에서 생기는 연초의 간근, 엽설, 각설, 증골, 양자골 및 이분’으로 각 규정했다(제1조 제1, 4, 6호). 이후 1988.12.31. 「담배전매법」이 폐지되고 1988.12.31. 법률 제4065호로 「담배사업법」이 제정됐는데, 위 법률에서는 ‘담배’를 ‘연초·잎담배 및 제조담배’로 정의했고(제2조 제1호) 담배부산물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으면서, 제조담배에 관해서는 종래와 동일하게 “잎담배를 주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제2조 제4호)”으로 규정했다.

구 「담배전매법」에서는 제조담배는 전매청만이 제조하고(제25조), 연초는 전매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경작 또는 시험 재배를 하지 못하며, 담배부산물가공품의 제조자 등이 연초 경작을 할 수 없도록 하고(제3조, 제9조) 담배부산물의 제조, 양도, 소지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제26조 제2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제55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1호)하도록 했다가 「담배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담배부산물가공품 제조자의 연초 경작 금지와 담배부산물의 제조, 양도, 소지 등에 대한 허가규정, 이들에 대한 각 형사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한 점, 구 「담배전매법」에서 담배부산물은 연초의 경작과정에서 생기는 연초의 줄기나 뿌리(간근, 幹根)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던 점, 위 법률 개정 전후로 제조담배의 의미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종래에는 ‘담배부산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뒀다가 담배부산물을 별도로 구분해 규율할 필요가 없어져 정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담배부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초 앞의 부산물까지도 「담배사업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담배사업법」의 제정 이유는, “국내담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전매제도를 개편하되, 제조담배의 제조에 있어서는 독점체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잎담배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종전 전매제도의 개편, 잎담배 생산 농가 보호의 목적 등 이외에 담배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목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4)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제조업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이에 대한 허가기준을 둔 것은,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담배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의 경쟁체제는 유지하면서도 군소 생산업체가 다수 설립되는 것을 막아, 담배의 품질과 공급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담배 소비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8. 9.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등 참조), 담배부산물에서 추출했다 하더라도 연초의 일부분을 원료로 해 제조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대법원 2017.11.23. 선고 2014두1628 판결 등 참조),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행정청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획재정부가 2016.9.29. 「담배사업법」 제2조를 근거로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고, 연초의 줄기·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획재정부의 회신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의 기준을 정당한 해석에 따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초의 ‘잎’ 중 잎몸 이외에 ‘잎맥’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물품의 원료에는 위 회신에서 담배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연초의 잎’이 포함돼 있는바, 위 회신을 근거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해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2019.11.4.경 관세청이 2019.7.25.경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에 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19.9.2. 수입신고 분’부터는 ‘줄기·뿌리 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된 물품의 수입자에게 구매 계약서, 제조사실 등 증빙자료(줄기 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 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구분)를 징구 후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자료가 구비된 경우라면 수입된 니코틴이 줄기니코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런데 관세청의 위 수입신고 수리 방침은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별 제조사실 증빙자료, 제조자 허가증 등의 자료에 의해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하고 있다는 점이 형식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에 의해 그와 같은 자료들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서류만 갖춰 제출하면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무조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명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통관이 이뤄져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이 담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 정당성을 지닌 합리적인 신뢰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킬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해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니코틴 성분은 연초 잎에서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담배사업법」도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여러 종류의 조세,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니코틴을 수입하려는 원고로서는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상용화돼 있는지, 쟁점 니코틴 제조업체인 C가 그러한 기술력을 가졌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는 C의 홈페이지, 회사 소개자료, 공개전양설명서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 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말만 믿고 쟁점 니코틴이 담배가 아니라고 봐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이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뿐,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즉 이 사건 물품에 함유된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전부 또는 일부 포함돼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C 스스로 작성한 홈페이지, 회사소개자료와 공개전양설명서, 호북공사와 C 사이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약’, 호북공사 및 중국 해관총서와 중국 운남성 인민정부외사판공실의 답변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잎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외에도 원고는 담배부산물인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담배사업법」의 취지 등을 봤을 때 담배부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 형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서도, 원고가 C의 홈페이지, 회사소개자료, 공개전양설명서 등을 통해 이 사건 물품 니코틴을 연초의 잎에서 추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했다.

제8413호[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Pumps for liquids, whether or not fitted with a measuring device; liquid elevators)]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김 명 섭 | 천안세관 조사심사과장

[해설 요지]

제8413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함)를 끌어 올리거나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장치를 포함하며, 이러한 기계와 장치는 수동식, 일체형 또는 별도의 동력 장치로 작동될 수 있다.

제8413호는 작동시스템에 따라서 (A) 용적형 왕복펌프(reciprocating positive displacement pump), (B) 용적형 회전펌프(rotary positive displacement pump), (C) 원심펌프(centrifugal pump), (D) 그 밖의 펌프, (E) 액체엘리베이터(liquid elevator)의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A) 용적형 왕복펌프 소그룹의 기기는 액체를 이송하기 위해 왕복 운동하는 피스톤(piston), 다이어프램, 플런저(plunger) 등을 이용한 펌프로, 용적 변화로 일정량의 액체를 직접 이동시킨다.

(B) 용적형 회전펌프 소그룹의 기기는 내부에 밀폐된 공간을 형성하는 회전 부품이 있어 그 회전운동에 의해 유체를 흡입 및 토출한다. 이 펌프는 캠(cam), 기어, 베인(vane), 스크루 등의 회전 부품이 펌프 본체 벽에 점으로 접촉하면서 유체를 밀폐된 챔버 안에 일정한 용적으로 가둬 이송시킨다.

(C) 원심펌프 소그룹의 기기는 액체가 축 방향으로부터 흡입돼 로터(rotor)의 회전 날개인 임펠러(impeller)의 회전에 따라 발생하는 원심력에 의해 액체가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출구)를 갖춘 케이싱(casing)의 원주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펌프다.

(E) 액체엘리베이터(liquid elevator) 소그룹의 기기는 액체를 수직 또는 경사 방향으로 올려보내거나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기기로, 액체 이송에 필요한 동력구조와 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다.

이 호로 분류되는 주요한 기기로는 플런저펌프, 피스톤펌프, 다이어프램펌프, 기어펌프, 베인펌프, 콘크리트 펌프, 원심펌프, 터빈펌프, 스크루 펌프, 액압식 램, 액체엘리베이터 등이 있다.

[주요 쟁점사항]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의 제정 취지는 5단위는 6단위보다 상위법에 해당하므로 5단위는 5단위끼리, 6단위는 6단위끼리 ‘서로 비교’해 소호의 용어와 소호 주에 따라 분류한다는 뜻이다.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위별로 같은 구분 기준을 필요로 한다. 제8413호는 소호의 구분 기준이 다양하며 이에 따른 HSK의 용어 해석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8413.20 소호에 ‘수지식 펌프’를 규정하고 있고 소호의 영문 규정은 ‘hand pumps’다. ‘수동식펌프 또는 핸드펌프’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기술적으로 적절해 보인다.

제8413호 해설서에 제8413.11 소호와 제8413.19 소호에 대한 해설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84류 주 제2호에 기능별 분류체계(제8401호부터 제8424호)가 산업별 분류체계(제8425호부터 제8480호)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별 분류체계인 제8413호가 제8432호의 농업용 기계, 제8435호의 음료나 술의 크러셔, 제8448호의 섬유산업에 사용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8476호의 자동판매기 등과 분류 경합할 때는 제8413호로의 분류가 우선한다.

1. 분류 체계

1) 호의 구성

제8413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를 끌어 올리거나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 기계와 장치를 포함하며, 이러한 기계와 장치는 수동식, 일체형 또는 별도의 동력 장치로 작동될 수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주유소에서 급유에 사용하는 계기나 가격 계산 기구를 갖춘 급유펌프, 그 밖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펌프[예 : 내연기관용 휘발유·윤활유·냉각수 펌프, 인조섬유 방사기용 펌프 등]도 포함된다.

제8413호는 작동시스템에 따라서 (A) 용적형 왕복펌프(reciprocating positive displacement pump), (B) 용적형 회전펌프(rotary positive displacement pump), (C) 원심펌프(centrifugal pump), (D) 그 밖의 펌프, (E) 액체엘리베이터(liquid elevator)의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A) 용적형 왕복펌프(reciprocating positive displacement pump) 소그룹의 기기는 액체를 이송하기 위해 왕복 운동하는 피스톤(piston), 다이어프램, 플런저(plunger) 등을 이용한 펌프로, 용적 변화로 일정량의 액체를 직접 이동시킨다.

이 펌프는 운동부(피스톤, 플런저, 다이어프램)가 왕복 운동을 하면서 실린더 내부의 용적을 변화시켜 유체를 흡입하고 토출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왕복 운동마다 고정된 부피의 액체를 이송하므로 정확한 유량제어와 고압 송출에 적합하다. 양수 방향에 따라 단동식과 복동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구조에 따라 피스톤펌프, 다이어프램펌프, 플런저펌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다이어프램펌프(diaphragm pump)는 내부에 설치된 탄성 있는 격막(다이어프램)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유체를 용적단위로 흡입하고 배출한다.
- (2) ‘오일-쿠션’ 펌프(oil-cushion pump)는 일반적인 왕복펌프가 가지는 충격과 진동 문제를 줄이기 위해, 피스톤 또는 다이어프램 구동 메커니즘에 오일(Oil)을 이용한 완충(Cushioning) 장치를 통합한 펌프로 오일 층 또는 오일 챔버는 펌프의 왕복 운동 전환 시 발생하는 유압 충격과 기계적 충격을 흡수해 소음을 줄이고 펌프의 수명과 안정성을 높인다.
- (3) 전자기(Electromagnetic) 펌프는 피스톤의 전진 및 후진(왕복) 동작이 전자기 작용으로 이뤄지는 펌프다. 피스톤에 설치된 날개가 자기장 내에서 진동하며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피스톤에 의해 액체를 용적 단위로 흡입 및 토출한다.
- (4) 콘크리트 펌프는 점도가 높고 무거운 액체인 콘크리트 혼합물을 이송하기 위한 펌프다. 피스톤이 실린더 내에서 후진하면 내부 압력이 낮아져 콘크리트가 흡입되고, 피스톤이 다시 전진하면 압력이 높아져 콘크리트가 토출구를 통해 밀려난다. 이 펌프가 영구적으로 부착된 차량은 본질적인 특성이 차량에 있으므로 제8705호로 분류한다.

(B) 용적형 회전펌프(rotary positive displacement pump) 소그룹의 기기는 내부에 밀폐된 공간을 형성하는 회전 부품이 있어 그 회전운동에 의해 유체를 흡입 및 토출한다. 이 펌프는 캠(cam : lobe)이나 기어, 베인(vane), 스크루(screw) 등의 회전 부품이 펌프 본체 벽에 점으로 접촉하면서 유체를 밀폐된 챔버 안에 일정한 용적으로 가둬 이송시킨다. 회전 장치의 특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기어펌프(gear pump)는 회전하는 두 개 이상의 기어를 통해 펌프 케이싱 내부에서 유체를 흡입하고, 톱니 사이의 공간에 유체를 가둬 토출구로 강제로 밀어냄으로써 압력을 형성하고 유체를 용적 단위로 이송한다.
- (2) 베인펌프(vane pump)는 회전자(Rotor)에 설치된 여러 개의 베인(Vane ; 날개)이 원심력이나 스프링, 또는 유압에 의해 펌프 케이싱(Stator/Cam Ring) 내벽에 밀착돼 회전하면서 액체를 용적 단위로 흡입 및 토출한다. 밀폐된 공간의 부피 변화를 이용해 작동하며, 비교적 저소음이고 부드러운 유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3) 로터리 피스톤 로브형의 펌프(rotary piston lobe type pump)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 이상의 로브(Lobe)를 사용해 액체를 용적 단위로 흡입구에서 토출구로 이송한다. 로브의 회전으로 펌프 내부에 공간(캐비티)이 형성되고, 이 공간을 통해 일정한 양의 유체가 연속적으로 이동한다.

(4) 나선 펌프(helicoidal pump : screw pump)는 펌프 내부의 나사(로터)가 회전하면, 이 나사선과 외부 케이싱(고정자) 사이에 밀폐된 공간(챔버 또는 공동)이 연속적으로 형성된다. 이 밀폐된 공간에 유체가 갇히게 되고, 나사가 계속 회전함에 따라 이 공간이 흡입 측에서 토출 측으로 이동하면서 유체를 일정한 압력으로 연속적으로 밀어낸다.

(5) 연동펌프(peristaltic pump)는 소화기관에서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근육의 수축 및 이완 작용을 모방(연동 운동 ; Peristalsis)한 펌프로 압축·이송·복원 및 흡입의 파동적인 움직임(연동 운동)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액체를 용적 단위로 이송한다. 유연한 튜브와 롤러 등으로 구성돼 있고, 롤러가 항상 튜브의 한 부분을 누르고 있어 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때도 튜브가 밀봉된 상태를 유지하므로 역류 방지(No backflow)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체크 밸브가 필요없다.

(C) 원심펌프(centrifugal pump) 소그룹의 기기는 액체가 축 방향으로부터 흡입돼 로터(rotor)의 회전 날개인 임펠러(impeller)에 의해 회전이 시작되고,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에 의해 액체가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출구)를 갖춘 고리 모양 케이싱(casing)의 원주 방향으로 액체가 흐르게 되는 펌프다. 케이싱에는 액체의 운동 에너지를 고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분기익(divergent vane : diffuser vane)이 부착돼 있는 경우도 있다.

고압 면에 있어서는 다단식 원심펌프를 사용하며 액체는 같은 축에 부착된 다수의 임펠러(impeller)를 통해 여러 단계로 이동돼 더 높은 압력을 얻는다. 원심펌프는 전동기·내연기관이나 터빈 등의 원동기에 직접 연결돼 고속으로 회전하게 돼 있다.

이 그룹에는 수중펌프·중앙난방 순환 펌프·채널 임펠러 펌프(channel impeller pump)·사이드채널펌프(side channel pump)와 원심임펠러펌프(radial flow impeller pump)를 포함한다.

(D) 그 밖의 펌프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전자기(electro-magnetic) 펌프는 전자기력을 이용해 전기 전도성(electrically conductive)이 있는 액체(주로 용융 금속, 용융염, 브라인 등)를 로런츠 힘(Lorentz force)의 원리를 응용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품 없이 액체를 순환시키는 펌프다. 따라서 (A) 용적형 왕복펌프의 한 종류인 (3) 전자기(Electromagnetic) 펌프와 구별된다.

(2) 이젝터(ejector : 배수펌프)는 동력원이 아닌 분사 유체(모체)의 운동 에너지로 흡입 대상 유체(액체 또는 기체)를 유동시키며 ‘분사펌프’, ‘제트펌프’, ‘이젝터 펌프’ 등으로 불리고 기계적 가동부가 거의 없다. 즉, 모체 유체(예 : 고압증기나 공기, 혹은 물)를 노즐에서 고속 분사하면 노즐 팁 주변에 높은 유속, 낮은 압력이 형성되면서 액체가 흡입되고, 두 유체는 혼합돼 확산 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혼합된 유체는 확산 관을 지나면서 속도는 감소하고 압력은 회복돼 펌프 외부로 배출된다.

(3) 에멀전 펌프(emulsion pump : gas lift pump)는 압축가스(주로 압축공기)를 사용해 액체를 들어 올리는 방식의 펌프를 말하며, 특히 압축공기를 사용할 경우 ‘에어 리프트 펌프 (Air lift pump)’라고 불린다. 액체와 압축가스를 배출 파이프(riser tube) 내에서 혼합해 에멀전화된 액체의 밀도를 감소시켜 부력(lift)을 발생시키는 원리다.

(4) 증기나 가스 압력에 의한 펌프는 직접 액체의 표면에서 행해지며 아래의 기기들이 있다.

- ㉠ 가스연소펌프 : 가스 또는 액체연료의 폭발적인 연소력을 이용해 직접 액체를 펌프 챔버 내에서 밀어 내어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키는 펌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어가 어려워 사용되지 않는다.
- ㉡ 증기 맥동기(steam pulsator)(기압 양수기 : pulsometer) : 증기 에너지를 직접 사용해 액체를 펌핑하는 왕복 운동 부품(피스톤, 로드 등)이 없는 펌프다. 증기의 압력으로 액체를 밀어내고, 증기의 응축으로 발생하는 진공(압력 강하)을 이용해 액체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효율성이 낮아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 ㉢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압축공기식 체임버 엘리베이터(Monteju) : 간헐적인 기체-양수 펌프(intermittent gas-lift pump)나 공기 변위 펌프(air displacement pump) 원리를 사용하며, 증기 또는 압축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액체를 이송한다. 효율성이 낮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 액압식 램(hydraulic ram) : 흐르는 물의 운동 에너지를 활용해 물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급격히 멈출 때 발생하는 수격 작용(water hammer effect)을 이용해 물의 일부를 원천보다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는 자가 동력 펌프다. 저낙차(low head), 대유량(high flow)의 물을 고낙차(high head), 소유량(low flow)으로 변환하는 에너지 재분배 방식의 하나다.

(E) 액체엘리베이터(liquid elevator) 소그룹의 기기는 액체를 수직 또는 경사 방향으로 올려보내거나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기기로, 액체 이송에 필요한 동력구조와 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버킷(bucket)·스쿠프(scoop) 등이 부착된 엘리베이터 휠(wheel) : 물이나 다른 액체를 회전하는 바퀴나 연속적인 체인에 달린 버킷(bucket), 스쿠프(scoop), 또는 통(pot)을 사용해 낮은 수위에서 높은 수위로 직접 퍼올려 이송하는 기계장치로, 주로 관개를 위한 물 공급이나 대량의 저장정 이송에 사용한다.

(2) 버킷(bucket)·스쿠프(scoop)·고무로 만든 컵 등이 부착된 체인식이나 케이블식 엘리베이

터 : 액체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수직 또는 거의 수직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로 현재는 유압펌프나 원심펌프에 밀려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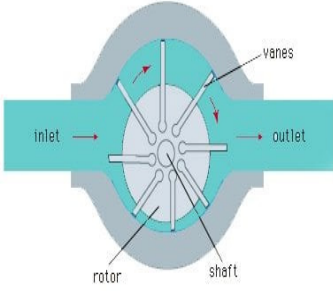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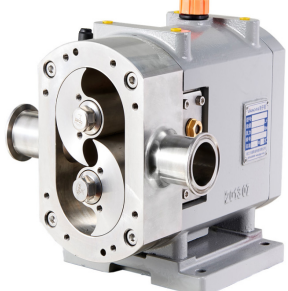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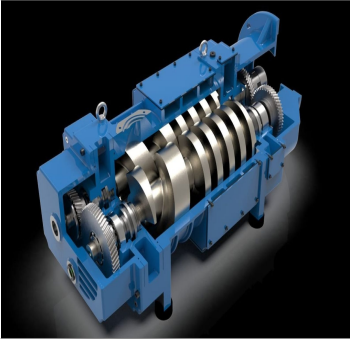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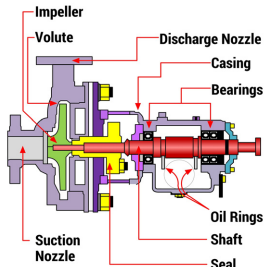
(3) 밴드 엘리베이터(band elevator) : 섬유 또는 금속 재질의 무한 밴드(endless band)를 회전시켜, 밴드의 표면에 모세관 현상(capillarity)으로 물을 부착시킨 후, 원심력을 이용해 부착된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며 배출한다. 효율이 낮아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으며, 주로 농업용 관개, 우물물 양수, 또는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양수 장치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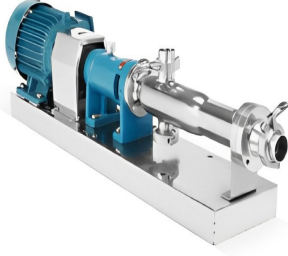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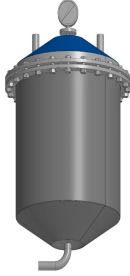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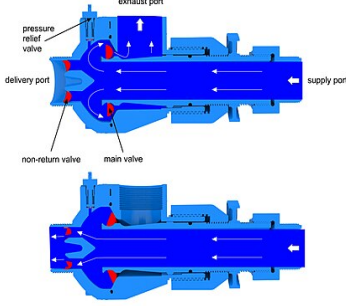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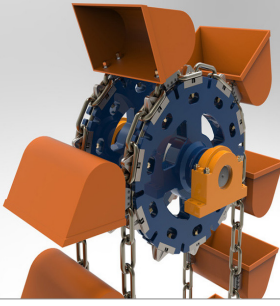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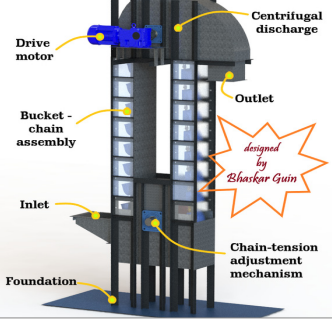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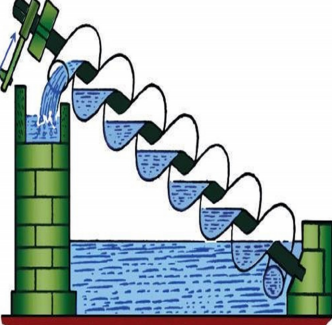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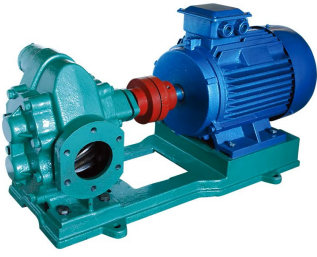
(4) 아르키메데스 스크루(Archimedean screw)식의 엘리베이터 :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형태의 펌프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원통 내부의 나선형 날개(스크루)를 회전시켜 낮은 곳에 있는 액체(주로 물)나 고형물을 높은 곳으로 연속적으로 끌어올린다. 주로 관개(농업용수), 배수,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 시설에서 저지대의 물을 처리 시설로 이송하는 데 사용된다.

이 호로 분류되는 주요한 기기로는 플러저펌프, 피스톤펌프, 다이어프램 펌프, 기어펌프, 베인 펌프, 콘크리트 펌프, 원심펌프, 터빈펌프, 스크루펌프, 액압식 램, 액체엘리베이터 등이 있다.

2) 제8413호의 다양한 기기

다이어프램펌프 작동 원리	이중 다이어프램펌프	오일-쿠션펌프
전자기펌프	콘크리트펌프 구성 요소	기어펌프 구조

베인펌프 구조 	베인펌프 	로터리로브펌프 
스크루펌프 구조 	연동펌프 	다양한 수중펌프 
중앙난방 순환펌프 	채널임펠러펌프 	사이드채널펌프 
원심 임펠러펌프 	범용성 원심펌프 	다단식 원심펌프 구조 Components of Centrifugal Pumps 

배수펌프 	에멀전펌프 	monteju(문테주) 
액압식 램 구조 	버킷이 부착된 체인식 액체엘리베이터 	체인식 액체엘리베이터 구조 
밴드 엘리베이터 	아르키메데스 스크루 작동 원리 	아르키메데스 스크루 엘리베이터 
기어 타입 윤활유 오일펌프 	볼류트펌프 	터빈펌프 

3) 제8413 소호의 구성

제8413 소호는 종류, 형식, 용도, 부착물 등에 따라 5단위 소호를 9개로 세분화했고, 해설서의 예시 물품과 거래량, 부분품의 구분을 기초로 총 12개로 세분화했다. 소호의 구분에 대한 문제점은 쟁점사항에서 다룬다.

소호의 용어를 간단히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제8413.1 -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추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 제8413.11 -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 제8413.19 - 기타
- 제8413.20 - 핸드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 제8413.30 -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 제8413.40 - 콘크리트 펌프
- 제8413.50 -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 제8413.60 -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 제8413.70 - 그 밖의 원심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 제8413.8 - 그 밖의 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 제8413.81 - 그 밖의 펌프(제8413.1호 내지 제8413.70호의 것은 제외한다)
- 제8413.82 - 액체엘리베이터
- 제8413.9 - 부분품
- 제8413.91 - 펌프의 것
- 제8413.92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 [소호 해설] 제8413.11호와 제8413.19호

이 소호에는 액체가 배출되는 양의 용적 조절이 가능한 기기를 갖춘 유닛을 형성하거나 형성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어느 형의 것이든 이러한 펌프만을 포함하며, 이러한 기기가 펌프와 동시에 제시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조절계기는 매우 단순한 것도 있고[예 : 눈금이 매겨진 구(球)나 유닛], 반대로 주어진 액체의 전량이 배출되면 펌프가 자동적으로 정지되게 조절되는 더욱더 복잡한 기계장치로 구성되는 것도 있으며[예 : 눈금이 매겨진 실린더(cylinder)(측정용 실린더)로 구성되는 배송 펌프로서 한편에는 요구량의 한계를 정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리 정해 놓은 양이 되었을 때 펌프 모터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 장치가 있는 것], 본래의 용량제어와 연결시켜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있다[예 : 총량 집계용 펌프·선급 펌프(prepayment pump)·가격계산 펌프·샘플링(sampling) 펌프·자동혼합조절 펌프와 자동조제 펌프].

다른 한편, 예를 들면, 측정계기가 펌프의 유동에 의하여 액체가 움직이는 관에 단순히 부착되도록 설계된 경우 이들 두 장치(펌프와 측정계기) 비록 함께 제시하였을지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들 소호에는 예를 들면, 식료품가게·실험실과 여러 가지 공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측정계기를 갖춘 펌프는 물론 가솔린이나 모터(motor)용 연료와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를 포함한다.

4) 제8413호 HSK의 구성

소호의 분류에 따라 용도, 품명을 중심으로 해설서에 예시하고 있는 펌프들을 세분화 또는 나열하고 있으며 협정세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관련 규정

제8413호의 ‘그 밖의 엔진과 모터’를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10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제84류 주 제2호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 제8404호의 용어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 제8409호의 용어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제8414호의 용어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 제8424호의 용어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

■ 제8428호의 용어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

■ 제8432호의 용어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

■ 제8435호의 용어

포도주·사과술·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press)·크러셔(crusher)와 이와 유사한 기계

■ 제8448호의 용어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 도비(dobby)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 스피들·스핀들 플라이어·침포·코움(comb)·방사니플·셔틀·종광(heald)·종광프레임·메리아스용 바늘]

■ 제8476호의 용어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3. 주요 쟁점사항

제8413호의 분류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8413호 소호에 대한 분류체계의 문제점은?
- 2) 제8413.20 소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지식 펌프의 올바른 번역과 분류는?
- 3) 제8413.11 소호와 제8413.19 소호 해설의 문제점은?
- 4) 제84류 주 제2호 규정에 따른 제8413호의 분류는?
- 5) 제8413호와 경합하는 물품과 세번은?

1) 제8413호 소호에 대한 분류체계의 문제점은?

소호의 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에 따라 5단위와 6단위를 분류한다. 통칙 제6호에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5단위는 6단위보다 상위법에 해당하므로 5단위는 5단위끼리, 6단위는 6단위끼리 서로 비교해 소호의 용어와 소호 주에 따라 분류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위별로 같은 구분 기준이 필요로 한다. 여기서 구분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품명, 중량, 형식(타입), 용도, 종류, 전기적 량(출력, 전압, 전류, 저항 등) 등이 있다.

제8413호 5단위 소호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제8413.1 소호는 품명+부속품, 제8413.2 소호는 작동 방식, 제8413.3 소호는 용도, 제8413.4, 제8413.5, 제8413.6, 제8413.7 소호는 종류, 제8413.8 소호는 품명으로 보인다. 이렇게 구분 기준이 다양하면 중복분류의 문제점이 반드시 발생한다.

예를 들면 제8413.20 소호의 수지식 펌프는 제8413.1 소호(계기를 갖춘 펌프)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8413.20 소호(수지식 펌프)에 “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제정해야만 한다.

또한 제8413.1 소호와 제8413.30 소호는 같은 특정 소호이므로 같은 지위를 갖는다. 이 경우에도 중복분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기를 갖춘 피스톤 내연기관용의 연료 급유용 펌프’가 있다면 어디에 분류해야 하는가? 이러한 기기는 두 개의 소호에 분류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다른 문제로 제8413.5 소호(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제8416.6 소호(그 밖의 용적형 회전 펌프), 제8413.7 소호(그 밖의 원심펌프), 제8413.8 소호(그 밖의 펌프)와 같이 ‘그 밖의’ 기기를 분류하기 위한 잔여 소호를 남발하게 된다.

HS관세율표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통계’이므로 거래량을 기초로 호와 소호를 제정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할지라도 호와 소호는 다자간 협정에 의한 법(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호의 분류 기준을 해설서에 나와 있는 ‘작동시스템’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교류 모터가 결합한 세탁기 배수용 펌프에 대한 다음의 분류 사례를 살펴보면, 제8413호에는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8501호의 모터가 결합한 동력식의 펌프는 제8413호로 분류된다.

소호의 분류를 살펴보면 제시된 상태는 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추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면 제8413.1 소호에서 제외되며, 수동식이 아니므로 제8414.20 소호에서 제외된다. 또한 용도나 품명 규정에 따라 제8413.30 또는 제8413.40 소호로 분류할 수 없다. 임펠러의 회전에 의한 원심력에 의해 액체의 토출이 되므로 제8413.70호 ‘그 밖의 원심펌프’로 분류된다.

HSK의 결정에 있어서 수영장용이 아니므로 제8413.70-3000호(수영장용)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제8413.70-90호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HSK 9단위 결정을 살펴보면, HSK 제8413.70-9010호의 터빈펌프(turbine pump)는 임펠러 외곽에 안내 깃(diffuser vane)이 있어서 유체의 속도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압력 에너지로 전환하며 비교적 고양정·저유량용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제8413.70-9020호의 볼류트 펌프(volute pump)는 임펠러 둘레에 안내 깃이 없이 나선형(spiral) 볼류트 케이싱(volute casing)만 형성돼 있고, 저양정·대유량에 쓰인다는 점에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잔여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된다.

이처럼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구분 기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시행기관	2022년 제4회 품목분류위원회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413.70-9090호
경합 세번	제8413.70-9090호, 제8413.91-4000호, 제8501.10-2000호
품명	MOTOR AC PUMP
물품 설명	○ 개요 세탁기 배수구 쪽에 설치돼 세탁조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구 밖으로 배출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동기(출력 30W)와 몸체, 임펠러(날개), 축, 오링, 전기접속자 등으로 구성돼 있음. 세탁기 내부에 케이싱(유입구와 토출구가 형성된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과 결합해 사용됨. 원리 : 임펠러 회전 → 펌프 내부 진공상태 → 임펠러 중심부로 액체 흡입 → 원심력으로 액체 압력 상승 → 토출구로 액체 유도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3.70호에는 ‘그 밖의 원심펌프’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 ‘(C) 원심펌프’에 대한 설명 부분에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 방향으로 부터 유입되며 로터의 회전 블레이드(임펠러)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를 갖춘 환상의 케이싱의 원주 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 게 된다”고 하면서 원심펌프는 전동기·내연기관이나 터빈에 의해 구동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세탁기 배수구 쪽에 설치되는 원심펌프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탁기의 부분품보다는 제8413호가 우선 분류됨.
결정 사유	다만, 물의 유로 등을 만들어주는 케이싱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펌프의 필수 구성요소인 전동기와 펌프 몸체, 임펠러, 축, 오링 등을 갖추고 있고, 전동기에 의해 임펠러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그 원심력에 의해 물이 배수되는 원심펌프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상태를 제8413.70호의 완전한 원심펌프로 분류함이 타당함. HSK 10단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속도를 압력으로 변환시키는 소라형의 와류실이나 안내 것이 없고 임펠러의 모양이 스크루형 등이 아닌 ‘+’ 형태로 돼 있으므로 ‘기타의 펌프’에 해당됨.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70-9090호에 분류함.

2) 제8413.20 소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지식 펌프의 올바른 번역과 분류는?

제8413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수동식(operated by hand)의 액체펌프도 이 호로 분류된다.

제8413.20 소호에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소호의 영문 규정은 ‘Hand pumps’다. ‘수지식(手持式)’은 ‘손으로 잡는 형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표현인데 실제 동작 방식 즉, 손으로 작동시키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표현으로 보인다.

Hand pump는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손잡이를 움직여 압력을 발생시키는 ‘수동 구동식 펌프’를 뜻한다. 기술 문헌이나 산업계에서는 ‘핸드펌프’, ‘수동펌프’, 또는 ‘수동작동펌프’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수동식펌프 또는 핸드펌프’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기술적으로 적절해 보인다.

제8424호에 ‘액체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의 물질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동식의 펌프질(예 : 샴푸, 화장품 등) 기기의 경우 액체를 드립식으로 펌프질하므로 제8413호의 수동식 펌프로 분류할 것인지 제8424호의 액체의 살포기로 분류할 것인지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제8424호 해설서에 “차량식이 아닌 소화용 펌프(내부저장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는 제8413호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화기는 제8424호로 분류되지만, 소화기에 사용하는 펌프는 제8413호로 분류하라는 취지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제3호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의 취지상으로도 제8413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플라스틱 핸드펌프의 제8413호 결정사례 ●

시행기관	2021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413.20-0000호
경합 세번	제8413.20-0000호, 제8424.89-9000호
품명	플라스틱 펌프

○ 개요

액추에이터(헤드), 피스톤, 스프링, 밸브, 튜브 등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재질의 펌프(저장용기 미제시)

용도 : 삼푸, 바디워시, 핸드워시 등을 담은 저장용기와 결합돼 일정량의 내용물을 용기 밖으로 배출하는 데 사용

물품 설명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20호에는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 구동식(원동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A)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해설에서 “선형(線型) 흡인이나 압출 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과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결정 사유

본건 물품은 손의 힘으로 헤드를 누르면 유입밸브가 닫히고 유출밸브가 열리면서 챔버 내 내용물이 토출되고, 헤드를 놓으면 반대로 유입밸브가 열리고 유출밸브가 닫히면서 챔버 내 내용물이 유입되는 원리로 작동되므로 상기 해설서 규정의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설명에 부합함.

참고로 제8424호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와 관련해, 본건 물품은 넓게 퍼지거나(살포 ; dispersing)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토출(분무 ; spraying)되지 않으며, 특히 분사(projecting)의 경우 압력을 가해 액체를 세차게 뿜어냄으로써 수압에 의해 세척을 하거나 멀리 보내는 등 특정한 목적성 또는 방향성을 수반하나, 본건 물품은 단순히 용기 내 액체를 일정량 퍼올려서 밖으로 이동, 즉 덜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분사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제8424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손으로 헤드부분을 눌러 액체를 퍼올려 토출하는 수지식 액체펌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20-0000호에 분류함.

3) 제8413.11 소호와 제8413.19 소호 해설의 문제점은?

제8413.11 소호에 규정된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는 주유소나 정비소(garage)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연료나 윤활유를 급유하는 데 사용하는 펌프를 말한다. 이들 펌프는 보통 펌프 유닛, 유량계와 같은 측정장치, 제어 및 표시장치, 기타 부속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유량계와 같은 측정장치의 결합 유무였다. 제8413.1 소호 해설의 요지를 살펴보면 “어떤 종류의 펌프에 상관없이 액체를 용적 단위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함께 형성되거나, 형성하도록 설계된 펌프만 이 소호로 분류한다. 제어장치는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있다. 이 제어장치가 펌프에 간단히 부착하도록 설계되었으면 함께 제시된 경우라도 각각 분리해서 분류한다. 측정장치가 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펌프와 결합한 것은 이 소호로 분류한다(측정장치가 범용성인지 여부에 상관없다)”라고 돼 있다.

좀 더 쉽게 요약하자면 ① 용적을 측정하는 장치와 결합한 펌프, ② 용적을 측정하는 장치와 결합하도록 의도된 펌프는 이 소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용적을 측정하는 장치를 간단히 탈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이 제시되더라도 각각 따로 분류한다.

통칙 제6호에 대해 앞서 설명한 것처럼 5단위와 6단위 소호의 결정은 소호의 용어와 소호 주에 따라 분류하므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펌프는 제84류에 분류되고 측정장치는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이다. 이들 물품이 결합돼 제시되거나 분리돼 같이 제시되는 경우,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6부 주 제3호(복합다기능기계분류규정), 제16부 주 제4호(기능단위기계분류규정), 제90류 주 제1호 사목(제8413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는 제외한다), 제90류 주 제3호(복합다기능기계와 기능단위기계분류규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또는 통칙 제2호 가목과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해서 분류해야 한다.

제16부 총설에서도 제16부 주 제3호 및 제4호 분류 규정에 대해 부연 설명으로 부속기기의 분류에 대해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 압력계·온도계·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컨트롤패널(control panel)·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펌프와 다용도 측정기기가 같이 제시되는 경우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413호로 함께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각각 분리해 제8413호와 제90류의 해당호로 분류할 것인지 우선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분류하면 그만이다. 결론적으로 제8413.11 소호와 제8413.19 소호 해설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제84류 주 제2호 규정에 따른 제8413호의 분류는?

제84류 주 제2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1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기능별 분류체계(제8401호부터 제8424호)가 산업별 분류체계(제8425호부터 제8480호)에 우선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른 예시를 들어보면,

제8432호의 용어에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액체엘리베이터와 액체 펌프[농업용 기계의 차륜 위에 장치되어 분사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허브 펌프(hub-pump)를 포함한다]’는 제8413호로 분류한다.

제8435호의 용어에 ‘포도주·사과술·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press)·크러셔(crusher)와 이와 유사한 기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포도주·과실주스·사과주 등에 사용하는 펌프(전용인지에 상관없다)는 제8413호로 분류한다.

제8448호의 용어에 ‘섬유산업에 사용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예 : 스핀들·스핀들 플라이어·침포·코움(comb)·방사니플·셔틀·종광(heald)·종광 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조섬유의 압출용 펌프’는 제외해 제8413호로 분류한다.

제8476호의 용어에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유소나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는 제외해 제8413호로 분류한다.

5) 제8413호와 경합하는 물품과 세번은?

제8404호에는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 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 원동기용 응축기’를 규정하고 있다.

제8404호 해설에 설명했듯이 제8404호는 제8413호와 같이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특정한 호’다. 따라서 두 호 간 분류의 우선순위는 같으므로 ‘보일러의 강제급수용 이젝터(ejector)’는 제8404호의 ‘보일러의 부속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제8413호의 ‘액체펌프’로 분류할 것인지 쟁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8404호 해설서에 “제8413호에 해당되는 펌프[보일러의 강제급수용

이젝터(ejector)를 포함한다]”를 제8404호에서 제외하도록 부연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불꽃점화식내연기관)나 제8408호(압축착화식내연기관)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8409호는 제16부 주 제2호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집단 부분품 호이므로 이들 내연기관에 사용하는 인젝션펌프(injection pump)는 제8409호에서 제외해 특정한 호인 제8413호로 분류한다.

제8413호 “(D) 그 밖의 펌프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3) 에멀전 펌프(emulsion pump)”를 예시하고 있으며 “Gas lift pump라고도 하며 압축가스(주로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액체를 들어 올리는 방식의 펌프를 말하며, 특히 압축공기를 사용할 경우 ‘에어 리프트 펌프(Air lift pump)’라고 불린다. 액체와 압축가스를 배출 파이프(riser tube) 내에서 혼합하여 에멀전화된 액체의 밀도를 감소시켜 부력(lift)을 발생시키는 원리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에멀전펌프는 액체와 압축가스를 혼합하는 원리이므로 제8413호(액체펌프)와 제8414호(기체 펌프)가 경합이 된다. 에멀전펌프는 압축가스를 사용해 액체를 들어 올리는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제16부 주 제3호(복합다기능기계분류규정)나 제84류 주 제8호(다용도기계분류규정) 등을 적용해 제8413호로 분류한다.

제8428호의 용어에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 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버켓(bucket)식·체인식·스크루식·밴드식이나 이와 유사한 종류의 액체엘리베이터는 제8424호에서 제외해 제8413호로 분류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향미용 조제품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최근 통관 현장에서는 향미용 조제품의 성분과 용도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같은 제품이라도 제3302호(향료·조제품)와 제2106호(기타 조제 식료품) 사이에서 분류가 엇갈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배합 제품인데, 한쪽에서는 향료 조제품으로 판단하고 다른 쪽에서는 식품용 첨가물이 더 적합하다며 다른 호로 분류하는 식이다.

그 결과 같은 제품으로도 서로 다른 품목번호를 부여받는 상황을 맞이하고 이에 따라 통관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예측하지 못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오늘은 레몬 정유를 포함한 향미용 조제품에 관한 품목분류 상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레몬 정유, 설탕, 말토덱스트린, 레시틴, 이산화규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분말로 레몬에이드 음료베이스 제조에 사용하며,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제3302.10-2090호로 신고했다.

먼저 제3302호에는 “(6)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레진·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증량제(carrier)[예 : 식물유·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한 혼합물”이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조제품은 알코올을 함유한 것이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알코올성 음료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조에 사용한다. 이들 조제품은 이 류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들 방향성(芳香性) 물질은 일차적으로 **음료에 향기를 부여하는 데 사용하며 부차적으로 맛을 내는 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의 경우 ‘레몬 정유’라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이 있지만, **설탕, 레시틴 등이 많은 양으로 혼합**돼 있어 이를 단순히 희석제·증량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50호에는 ‘향미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갈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앞서 언급한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된 향미용 조제품’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5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COMPOUND FLAVOR	3302.10-2090 (A 5%)	Flavors in preparations	2106.90-9050 (A 8%)

2025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실무에 다각도로 활용하는 관세·무역 백과사전

- ☑ 최신 업데이트: 2025년 개정 HSK에 따른 FTA·WTO 세율 및 법령 개정분 수록 (한·필리핀 FTA 신규 추가)
- ☑ 정확성 강화: FTA·WTO 일부양허품목 세율체계 재정비로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 편의성 향상: 기본편 보기 요령 이미지 추가, 학명 표기 개선으로 이해도·가독성 제고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5 개정판 관세법령집

1

최신 기준 반영

- 관세/무역 관련 법령
- 2025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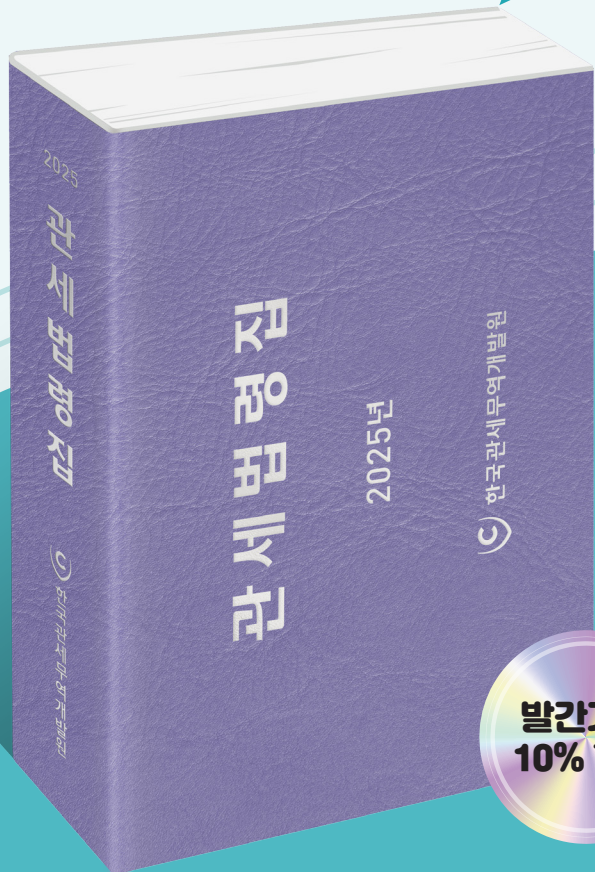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반영
- 고시 : 97개 → 82개
- 훈령 : 116개 → 92개
- 지시·지침 : 1,333개 → 501개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위임조문 3단비교 편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5,000원 → **58,500원**

2025년 6월 넷째주 발간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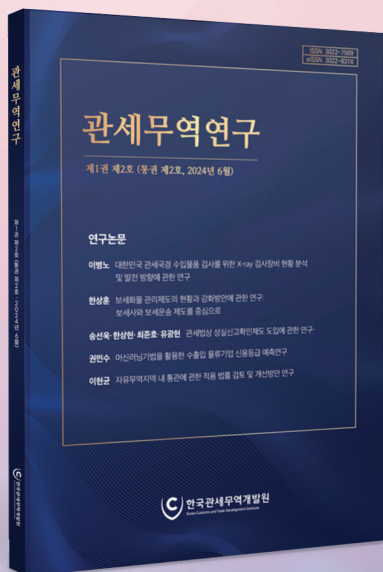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